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3.

발 의 자 : 송옥주·홍기원·한민수
서미화·이성윤·박 정
문대림·이수진·임미애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”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,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.

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,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, 어려운 한자어, 외래어·외국어,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 후단 및

제34조 제 목).

법률 제 호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후단 중 “육종(育種)”을 “품종개량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 제목 “(비밀엄수)”를 “(비밀유지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“현지내보존”이란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.	6. ----- -----.
이 경우 <u>육종(育種)</u> ·배양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.	----- <u>품종개량</u> ----- -----
7. ~ 12. (생 략)	7. ~ 12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<u>비밀엄수</u>) (생 략)	제34조(<u>비밀유지</u>)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